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97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이훈기 · 김현정 · 전진숙
김남희 · 민병덕 · 이인영
김선민 · 노종면 · 복기왕
황운하 · 양부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접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하여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의료인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营业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9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7. 의약품 도매상(「약사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 또는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p> <p>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의 준수사항)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 체를 제공·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 ⑤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p> <p>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의 준수사항) ①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 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u></p> <p>7. <u>의약품 도매상(「약사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 또는 거래에 부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는 행위</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